

The use of "other values" as a VAT imposition base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P1}

Provisions on aid/donations and grants that are not subject to Income Tax ^{P2}

Types of religious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VAT ^{P3}

Tax Allowance – an update ^{P4}

특정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금액"의 적용 가능

재무부는 2020년 7월 27일에 재무부 규정 No.89/PMK.010/2020 (PMK-89)을 발표하여, 특정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PMK-89의 첨부 A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플랜테이션, 곡물, 관상용 식물, 의약품 및 임업(목재 및 비목재 제품포함) 관련 제품이 포함됩니다.

동 규정에서 포함하는 제품의 판매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의 10%로 적용하는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세 금액을 판매가격의 1%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부가세 과세표준(판매가격의 10% X 부가세율(10%)). 판매자가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기타 금액"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서(No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신청서는 "기타 금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최초 부가세 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기타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선택하여 제품을 농업, 플랜테이션 또는 임업 가공을 수행하는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자동적으로 VAT collector로 지정이 되며 반드시 판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받는 판매자가 “일반” 부가세율 적용자로 변경을 위하여는 반드시 과세연도가 완전히 종료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일반 부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타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받은 과세연도가 종료한 이후에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첫번째 부가세 신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일반 부가세율 적용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기타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원조, 기부 및 보조금에 대한 규정

재무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원조, 기부 및 보조금에 대한 규정 No.90/PMK.03/2020 (PMK-90)을 2020년 7월 2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PMK-90은 기부자 및 수혜자 관점에서 각각 과세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격한 수혜자

동 규정이 적용가능한 적격한 수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1 단계 직계존비속 (즉, 생물학적 친부모 및 자녀);
- b. 종교 단체;
- c. 교육 기관;
- d. 재단을 포함한 사회 단체;
- e. 협동조합(cooperatives);
- f.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PMK-90은 상기 (a) – (f)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종교, 교육 및 사회 단체의 경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 관계 조항 (Special relationship provisions)

PMK-90은 특별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일상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고용관계, 서비스의 제공 또는 활동의 이행이 있는 경우, “고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소득세법(ITL) 제 18 조 4 항에 따른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가 있는 경우, “소유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소득세법 제 18 조 4 항에 따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지배력”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기부자에 대한 규정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원조, 기부 및 보조금의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조, 기부 및 보조금의 일환으로 자산의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기부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동 이익은 시장가격과 아래에서 규정한 가격과의 차이로 계산이 됩니다:

- a. 기부자가 기장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 b. 기부자가 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원조, 기부 및 보조 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의 적용은 현행 세법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익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a. 원조, 기부 및 보조가 적절한 수혜자에게 주어진 경우;
- b. 기부자와 수혜자간에 비지니스, 고용, 소유권 및 지배력의 관계가 없는 경우.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종교, 교육 및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소유권, 지배력 관계가 있더라도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수혜자에 대한 규정

기부자와 수혜자간에 비지니스, 고용, 소유권 및 지배력의 관계가 없는 경우, 원조 및 기부는 수혜자 관점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a. 적절한 수혜자가 기부를 받은 경우; and
- b. 기부자와 수혜자간에 비지니스, 고용, 소유권 및 지배력의 관계가 없는 경우.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종교, 교육 및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소유권, 지배력 관계가 있더라도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조, 기부 및 보조금의 수혜자는 반드시 수령한 자산을 아래의 취득금액으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 a. 기부자가 기장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장부가액;
- b. 기부자가 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금액:
 - 토지 및 건물-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부동산 과세고지서(*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SPPT*)에 고지된 부동산 과세

적용가액(*Nilai Jual Objek Pajak*) 또는 토지 및 건물이 등록된 지방관청에서 발급한 서한의 금액(SPPT가 없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자산 -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시장가격.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가 손금산입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 서비스의 유형

부가세법에 따르면 일부 종교 서비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예배당과 관련한 서비스;
- b. 설교의 이행과 관련한 서비스;
- c. 종교적 활동 조직 서비스;
- d. 종교분야의 기타 서비스.

재무부는 2020년 7월 23일에 상기의 d)에서 언급한 기타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92/PMK.03/2020 (PMK-92)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0년 8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은 종교분야의 기타 서비스는 성지순례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각 종교를 위한 적격한 성지순례의 목적지는 PMK-9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적격하지 않는 목적지(환승제외)가 포함된 경우에는 동 구간에 대해서는 10%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하기와 같이 계산됩니다:

- a. 부가세 과세표준 10% (실제 부가세는 인보이스 금액의 1%) - 인보이스가 성지순례 목적지와 기타 목적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경우;
- b. 부가세 과세표준 5% (실제 부가세는 인보이스 금액의 0.5%) - 인보이스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는 현행 부가세 규정과 동일하게 위에서도 같이 기타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Tax Allowance – 업데이트

재부무는 2020년 7월 27일에 기존 규정 No.11/PMK.010/2020 (PMK-11)을 개정하기 위하여 No.96/PMK.010/2020 (PMK-96)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0년 8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PMK-11에 대하여는 텍스플래쉬 3번([TaxFlash No.03/2020](#))을 참고하세요.

PMK-96은 신청/승인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의 개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최초신청서 제출을 OSS를 통하여였으나 신규규정에서는 MoF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적용요건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

PMK-96는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세제혜택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세제혜택의 시작을 위한 신청서에 제출하는 경우;
- 납세자가 Tax Allowance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결정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DISCLAIMER : 동 텍스플래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컨설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정확한 자문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또는 규정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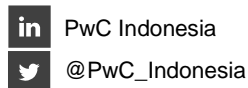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pwc.com

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0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